

#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서

2022년 증권 기준

## 문 1) 『변호사배상책임보험』(배상청구기준 증권)이란 무엇입니까?

- ▶ 피보험자가 "법률서비스(변호사의 전문업무)" 제공 중 과실로 고객 및 제3자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과 방어비용(소송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 피보험자 범위: 기명 피보험자와 그 임직원(기타 약관에 따름)
  - \* 법률서비스 : 변호사, 수탁자, 공증인 자격에 따른 전문서비스(기타 약관에 따름)

#### 문 2) 보험가입 전 업무의 담보여부 및『고지의무』

▶ 이 보험은 보험가입 전의 업무로 발생한 사고나 가입 당시 이미 발생한 사고, 손해배 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원인에 기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 3) 보험가입 후 알릴 사항 및 『통지의무』

▶ 보험가입 후 피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배상청구는 없 었지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상황통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의 통보가 늦는 경우 또는 보험기간 내에 통보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 4) 손해배상액 1억원 초과 위험에 대한 보상한도액 청약사항 신설

▶ <u>지방회의 단체보험에 가입 중인 변호사님을 대상으로</u> 하여 손해배상액이 1억원을 초 과하는 위험에 대하여 최대 3억원까지 추가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는 청약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사고 보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 손해배상액이 1억 5천만원일 경우 / 초과위험에 대한 보상한도 1억원 청약시

<b>←</b>			
지방회 자기부담금 <b>1천만원</b>	지방회 보상한도액 <b>1억원</b>	초과위험 담보 4천만원	



## 문 5) 『배상청구기준』증권과 『소급담보일』이란 무엇입니까?

▶ 배상청구기준증권이란 현재 유효한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중에 소급담보일 이후 사고로 제3자(의뢰인 포함)로부터 피보험자에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청구가 보상되는 증권입니다. 즉,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소급담보일(Retroactive Date) 이후의 업무에 기인한사고로 보험종료일 사이에 발생된 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며, 소급담보일이란 통상 최초 보험가입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소급담보일 이후의 업무가 계속 담보되지만 이때의 보상기준은 업무일이 속한 보험증권 가입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배상청구 당시의 유효한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기간중의 업무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 만기일 로부터 자동보고연장기간 70일이 경과하면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문 6) 『보상한도액』과 『공제금액』이란 무엇입니까?

- ▶ <u>보상한도액이란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상한선</u>을 뜻하며 보상 한도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 ▶ <u>공제금액이란 자기부담금</u>이라고도 하며 공제금액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며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 금액 차감 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됩니다.

## 문 7) 무사고 가입기간에 따른 할인율 적용

▶ 무사고 가입기간에 따라 추가 할인을 적용합니다. (갱신자에 한함)

무사고기간	1년 ~ 2년	3년 ~ 4년	5년 ~ 9년	10년 ~ 14년	15년 이상
할인율(%)	0%	10%	15%	20%	30%

#### 문 8) 『선의의 피보험자 부담보 특별약관』은 무엇입니까?

▶ 2011년 증권부터 선의의 피보험자 부담보 특별약관(Innocent Insured Exclusion Clause)이 추가 되었습니다. 보통약관상 다른 피보험자의 범죄, 사기 등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동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한 선의의 피보험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동 조항은 고의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보험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2011년 증권부터 보상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문 9) 고용한 직원의 횡령담보가 가능한가요?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 1일부터 **피보험자(변호사)가 고용한 직원의 부정직(또는 사기행위)** 



<u>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험기간 중에 발견된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특별약관</u> "Dishonesty Extension(Lawyer's Professional Liability)"을 개발해 직원 횡령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한도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 기본 담보의 50%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증권상 보상한도는 기본 및 추가 담보에 각각 적용하며 직원의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한도액 (청구당/연간총)	공제금액	고용인 1인당 보험료	
25 백만원 / 25 백만원		70,000 원	
5 천만원 / 5 천만원	5 백만원	81,000 원	
1 억원 / 1 억원		112,000 원	

- <u>고용직원 일괄가입조건</u>으로서 보험기간 중에 직원 신규입사/퇴사로 인하여 인원수 변경 시에는 반드시 록톤코리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직원이라 함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원으로 등록된 직원으로서 <u>변호사는 제</u> **외됩니다**.
- 최초가입 이후 발견시점에도 연속적으로 유효하게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변호사배 상책임보험 기본담보의 자동보고연장기간(70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u>사고 인지(Discovery)시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반드시</u> 통지해야 하며, 만일 기간 내에 통지가 되지 않을 경우 면책처리 됩니다.

예) 보험료 예시 : 변호사 1명, 직원 수 2명 / 연매출액 : 2억원/ 무사고갱신할인 -10%

구분	변호사배상책임보험 기본 가입	고용직원의 부정행위 추가 가입	
담보 기준	배상청구 기준	인지(발견) 기준	
보상한도액	2억원 (1청구당/총보상한도)	1억원 (1청구당/총보상한도)	
자기부담금	5백만원	5백만원	
보 험 료	324,700 x 90% = 292,230원 (변호사 1인)	<b>224,000원</b> (고용직원 2명 x 112,000)	
총 납입보험료	516,230원		

# 문 10)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 ▶ <u>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혜택</u>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고용직원의 부정직(또는 사기행위) 확장조항(Dishonesty Extension)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보험금 수령 후 갱신 시 3년 할증 적용됩니다. (사고조사 진행 중 갱신 시 10%할증)



수령보험금규모	1년차	2년차	3년차
1천만원 이하	30%	0%	0%
3천만원 이하	60%	30%	0%
5천만원 이하	100%	60%	30%
1억원 이하	150%	100%	60%
1억원 초과	200%	150%	100%

#### 문 11)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 법률적 손해배상금 : 판결액, 최종합의 및 화해액
  단, 징벌적손해, 벌과금, 과태료 등과 서비스 수수료 반환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사고처리 제비용 : 보험사에 의해 지정된 변호비용과 보험사에 의해 지급되거나 보험 사의 사전 동의 하에 지급한 피보험자의 기타비용으로서 조사, 방어, 합의 등의 과정에 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등

## 문 12)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부정직한, 사기적 범죄행위에 기인한 배상청구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업무행위에 기인한 배상청구
-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기인한 배상청구
- 다른 기관 및 정부기관의 공무원 자격, 다른 단체의 임원, 구성원, 대표자로 행한 활동 에 기인한 배상청구
- 유가증권, 부동산, 투자수단 홍보, 권유 및 투자자문에 대한 추천 및 의견에 기인한 배 상청구
- 보험개시 이전에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배상청구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계약상 가중책임. 단, 이 계약이 없었다면 부담하는 법률적 배상책임은 담보함
- 결과적 배상책임(간접손해)
-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노동쟁의 등 사태로 인한 배상청구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피보험자 및 피용인의 고의 등 행위 부담보

(고용직원의 부정직(또는 사기행위) 확장조항을 추가하지 않는 한, 보통약관의 담보조항에 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보험자'조항 등) 본 증권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종업원에 의한 고의, 부정직, 악의, 범죄, 불법행위에 기인한 배상책임은 담보되지 아니함)

- \* Provision of the 'innocent Insured' in Lawy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shall be excluded (선의의 피보험자조항 적용 안 함)
-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



#### 문 13) 사고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사고 예상 시, 손해배상청구 시 보험사에 즉시 서면 통보 요망)

▶ 피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배상청구는 없었지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록톤코리아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즉시 보험사에 서면에 의한 사고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상황통지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사실의 통보가 늦는 경우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접수된 경우 록톤코리아는 보험회사에 즉시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접수 후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거나 자체적으로 사고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고조사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약 3~4주가 소요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보험회사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정산하여 피보험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록톤코리아는 협상권을 가진 보험중개인으로서 계약자를 대변하여** 보험계약 내용의 해석 및 사실관계의 판단에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문 14) 록톤코리아(Lockton Korea)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록톤코리아는 보험회사와는 별도의 독립 단체인 보험중개사로 고객의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권유 또는 주선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체결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계약자의 대변인역할을 수행하며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 통보로부터 보험금 수령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업무를 지원합니다.

록톤코리아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직 업인들의 배상책임보험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어 이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상품안내이며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과 보상은 청약서상의 보험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 \* 이 보험의 보상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번역본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보상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약관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nbar.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다 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문의 및 안내

Tel: 02) 2011-0300, 0352~6 / Fax: 0503-8379-2008, 02) 2011-0301/02 담당: 이순옥 상무/윤원 이사/윤자영 차장/박순정 과장/이윤아 주임